

# 공시정보관리규정

<주관부서: 금융팀>

## 제/개정 이력

개정번호	제/개정	개정사유	발효일자
0	제정	정보부문과 화학부문의 조직통합	2007.1.1
1	개정	관계법령 개정	2009.7.13

## 목차

### 제 1 장 총칙

- 제 1 조 [목적]
- 제 2 조 [적용 범위]
- 제 3 조 [용어의 정의]
- 제 4 조 [공시원칙]

### 제 2 장 권한과 책임

- 제 5 조 [공시책임자]
- 제 6 조 [주관부서]
- 제 7 조 [현업부서]

### 제 3 장 공시 업무

- 제 8 조 [정기공시]
- 제 9 조 [수시공시/자율공시 등]
- 제 10 조 [공정공시]
- 제 11 조 [조회공시]
- 제 12 조 [기타공시]

### 제 4 장 기타

- 제 13 조 [보완조직의 구성]
- 제 14 조 [규정 및 절차의 위임]

### 부칙

# 제 1 장 총칙

## 제1조 [목적]

본 규정은 SKC주식회사(이하 회사라 한다)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## 제2조 [적용 범위]

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,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3조 [용어의 정의]

- ① 기업공시제도: 기업공시제도라 함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 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 즉, 경영실적, 재무상태, 합병,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며,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분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, 기업공시 또는 공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.
- ② 정기공시: 정기공시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동법”이라 한다) 및 금융위원회(이하 “금융위”라 한다)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, 분기보고서를 작성/제출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수시공시: 수시공시라 함은 자동법 및 금융위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, 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)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사유 발생시 신고/공시의무가 부여된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법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유발생 당일 또는 익일 이내에 신고/공시 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대규모내부거래공시: 대규모내부거래공시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“공정거래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,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「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,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여된 경영사항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⑤ 조회공시: 조회공시라 함은 풍문이나 보도 또는 가격이나 거래량이

급변하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에 대하여 거래소가 풍문 등의 사실여부 확인 및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⑥ 공정공시: 공정공시라 함은 회사의 장래계획, 실적 잠정치, 예측치 및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공시의무사항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중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반 제도를 말한다.
- ⑦ 미확정공시: 미확정공시라 함은 거래소가 당해 회사에 조회공시를 요청한 사항을 의사 결정과정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⑧ 불성실공시: 불성실공시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자통법, 금융위 관련규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.
- ⑨ 공시책임자: 공시책임자라 함은 회사를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공시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재무담당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지원부문 내 재무지원실장으로 한다.
- ⑩ 공시정보관리주관부서: 공시정보관리주관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라 함은 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재무지원실내 금융팀으로 한다.
- ⑪ 현업부서: 현업부서라 함은 주관부서 이외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.
- ⑫ 소관부서: 별표에 기재된 소관부서라 함은 현업부서 中 주관부서에게 최종적인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부서를 말한다. 동일 공시대상 건에 다수의 소관부서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그 중 하나의 부서를 선택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4조 [공시원칙]

회사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건전한 투자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준수하며,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또한 이러한 원칙은 공정공시를 포함한 모든 공시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고 관련 정보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.

## 제 2 장 권한과 책임

#### 제5조 [공시책임자]

공시책임자는 공시와 관련한 제반 신고의무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.효과적인 공시의무수행을 위한 회사의 방침 및 업무절차를 관리/감독할 책임이 있다

## 제6조 [주관부서]

주관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과 검토: 이를 위해 주관부서장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의사 결정사항 또는 경영현안과 관련된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.
2.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
3. 공시관련 법규의 제·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4. 기타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7조 [현업부서]

-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을 숙지하고, 이를 적시에 이행하여 공시의무 위반 및 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조치를 회피할 수 있도록 주요경영현안에 대해 주관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.
- ② 현업부서는 공시대상이 되는 주요경영사항의 적시 공시를 위하여 주관부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검토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공시의무사항의 신고 및 중요 정보의 제공은 주관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, 주관부서장은 회사의 모든 공시사항이 적절하게 공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정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④ 모든 임직원은 주요 경영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이의 최종단계 검토나 협의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증시에 풍문이 유포되어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내부적으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⑤ 현업부서는 언론과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, 주관부서가 필요한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## 제8조 [정기공시]

- ①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정기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주관부서는 현업 부서에게 정기공시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법 규정에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현업부서는 정기공시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제출한 자료의 충실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.

## 제9조 [수시공시/자율공시 등]

- ① 회사는 수시공시사유 발생시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수시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현업부서는 법규정에 공시/신고 의무가 부여된 중요 경영사항을 숙지하고, 사유 발생시 해당내용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동 사항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는 이사회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이 해당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주관부서장은 현업부서에서 통보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판단하고, 법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/신고의무를 이행한다.
  - 수시공시 해당 여부
  - 자율공시 해당 여부
  -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해당 여부

## 제10조 [공정공시]

- ① 회사는 공정공시 사유 발생시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공정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공정공시 준수의무  
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 공정공시 준수의무자로서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, 공정공시 사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**제11조 [조회공시]**

회사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있는 경우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조회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**제12조 [기타 공시]**

회사는 발행 및 특수공시 등 기타 공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별로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해당 공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**제 4 장 기타**

### **제13조 (보완조직의 구성)**

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완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. 보완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칙이나 내규에 따른다.

### **제14조 [규정 및 절차의 위임]**

본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규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규칙이나 내규에 따른다.

#### **부 칙 (2007. 1. 1.)**

① 본 규정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부 칙 (2009. 7.13)**

① 본 규정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